



# 삼척 도계2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상시모집 공고

[현장접수만 가능, 인터넷·모바일 접수 불가, 공고일 : 2022.07.25(월)]

- 공급위치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장원길 33
- 공급주택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280세대
-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더불어,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 공급을 위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7.25(월)**이며, **신청일(서류접수일)**이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에 있어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청약접수는 현장접수만 가능 합니다.(인터넷/모바일 신청은 불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신청일(서류접수일)** 현재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내 2건이상 신청시 중복신청으로 전부 무효처리 되며,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됨)하는 주택으로 **주택유무, 청약통장유무, 거주지역, 소득 등에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며** 공가 발생시 접수순번 순으로 순차적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위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 서의 지위는 자동소멸 됩니다. (임대기간 예정일 : ~ 2023.12.31일 까지)**
-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됩니다.

- 1세대 2인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삼척도계2 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 해제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만 거주할 수 있으며, 만약 중복 입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주택명도 처리됩니다.

**[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주택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택공급 개요
개요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로 구성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4조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8-471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분양전환가격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는 분양전환 시까지 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단,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li> <li>-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li> </ul>

##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관할 사무소		신청문의 전화번호
	사무소명	주소	
삼척도계2	내강릉권주거복지지사	강원도 강릉시 울곡로 2846, 페이토 2층	1600-1004

## I 공급규모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 1. 공급규모

단 지 명	위 치	총 세대수
삼척도계2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장원길 33(도계리 225)	12~15층 5개동 280세대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 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 공급대상(주택유형: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유형	주택형	신청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m <sup>2</sup> )					세대 대지 지분 (m <sup>2</sup> )	건설 호수	공가 호수	대기중인 예비자수	모집할 예비자수 (75)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면적 (계)					
					기타공용	주차장						
10년 공공 임대	59A	59형	59.75	24.8741	6.2268	16.7318	107.5827	50	65	11	-	35
	59B		59.75	25.2641	6.2268	16.7318	107.9727	51	57			
	59C		59.75	25.0741	6.2268	16.7318	107.7827	50	23			
	59D		59.99	25.5463	6.2519	16.7990	108.5872	51	23			
	74A	74형	74.91	30.8964	7.8067	20.9771	134.5902	63	50	8	-	25
	74B		74.98	31.1103	7.8140	20.9967	134.9010	63	15			
	84A	84형	84.80	34.9937	8.8374	23.7466	152.3777	72	26	3	-	15
	84B		84.95	35.5450	8.8531	23.7886	153.1367	72	21			

- 공가발생 상황 및 공가 상태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소멸 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기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 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단, 전환보증금 전환한도는 주택형 별로 다를수 있음)
- 예비자 신청 및 계약은 **주택형별 신청은 불가**하고, **신청유형으로만 신청이 가능** 하며 **계약시에도 주택형에서 선택계약은 불가**합니다. (예시: 59형, 74형, 84형)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습니다.(m<sup>2</sup>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sup>2</sup> ×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입니다.
- 상기 잔여세대 및 잔여 예비자 수는 해약 또는 예비자계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자는 대기중인 예비자의 입주 후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후 계약체결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시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해당단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주택형	임대조건			월임대료 (원)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 (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합계	계약금	잔금				
59A, 59B 59C, 59D	23,687,000	4,800,000	18,887,000	276,340	39,000,000	62,687,000	113,840
74A, 74B	25,942,000	5,200,000	20,742,000	375,980	54,000,000	79,942,000	150,980
84A, 84B	36,095,000	7,300,000	28,795,000	375,980	54,000,000	90,095,000	150,980

-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최초세대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항별.축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사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전환보증금은 계약자의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 전환보증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시기 및 전환보증금 납부시기에 따라 전환보증금 최대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명	주택형	계(천원)	택지비(천원)	건축비(천원)
삼척도계2	059.7500A	103,238	100,616	2,622
	059.7500B	103,629	100,995	2,634
	059.7500C	103,438	100,810	2,628
	059.9900D	104,205	101,555	2,650
	074.9100A	127,765	124,487	3,278
	074.9800B	128,065	124,778	3,287
	084.8000A	145,686	141,975	3,711
	084.9500B	146,422	142,689	3,733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세대당 5,500만원~7,500만원)하며, 용자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 계약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용자금의 상환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분양전환 기준
분양전환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 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 등에 따라 - 개인의 경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임차인으로써, <b>분양전환 시점에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에 유의</b> * 세대구성원 전원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조 4호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의미함
분양전환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b>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 임대 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총당금 범위 내)

## 4. 입주금(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 입주금(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지정 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에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에치금의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 일수에 연체료(현행 연 6.5%)가 부과됩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II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등

### 1. 신청자격

- 신청일(서류접수일) 현재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 주택소유여부, 청약통장유무, 거주지역, 소득 등에 관계없이 신청가능함.
  -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 단독세대주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의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특법시행규칙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 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2.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 모집예비자수 총원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순번 순으로 예비입주자의 순위를 결정합니다.
-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 모집은 미 총원시라도 신청접수는 중지 됩니다.(신청접수 불가)**
- 예비순번에 따라 배정되는 동호는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신청유형별 총 공급세대 중 계약해지, 해제, 금회모집 선정 입주자 미계약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접수순번에 따라 별도통보 및 계약하며,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상실 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신청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1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Ⅲ 모집일정 및 제출서류

### 1. 모집일정

단지명	신청접수	접수방법	접수장소 (신청접수 및 계약)	계 약 안 내
삼척도계2	2022.07.25(월) ~ 모집예비자수 총원시까지 (10:00~16:00)	<b>현장접수만 가능</b>  인터넷/모바일 신청 불가	삼척도계2 LH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음</li><li>계약체결시기 및 방법은 개별 통보 (공가 발생시 접수순으로 계약체결 안내문 순차적으로 통보)</li></ul>

#### ※ 신청시 주의사항

- 점심시간(12:00~13:00),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접수받지 않음
- 지정된 장소에서만 접수하며, 인터넷/모바일 신청 불가
- 1세대(해당세대 전원)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됨
- 신청당일 유효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불가하며,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며 또한 서류 반환하지 않음

## 2. 제출서류 (2022.07.25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공통 안내사항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 되도록 발급요망]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우편송달 및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신청자는 위임장, 신청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등 서류 제출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전부표기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제출서류

구 분	서 류 유 형		구비사항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필수)	○		①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②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배우자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상세로 발급(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b>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b>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b>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배우자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임</b>
추가서류 (해당되는 경우)		○	③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b>상세로 발급</b>
		○	④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위임장	신청자본인	• 신청자 및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대리신청할 경우 신청자본인의 서류 제출 • <b>대리인이 서류제출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및 대리인과의 관계를 알수 있는 증명서류 필히 준비할 것</b>

■ 신청장소(현장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장소	삼척도계2 LH아파트 관리사무소
위 치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장원길 33 (도계리 225)
약 도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IV

# 신청 시 확인사항 및 유의사항

### 1.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 4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2.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팸플릿 및 사이버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분양사무실 청약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지구 및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의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임대주택),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동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기존 입주자의 해약·퇴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사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 장판 등 내부 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훼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LH강릉권주거복지지사로 서면 또는 유선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센터 → 임대주택 → 개인정보

### 3.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계약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계약체결후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2.07.25**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붙임1] 주택형별 평면도

■ 주택형별 평면

삼척도계2【59A형 (65호)】



삼척도계2【59B형 (57호)】



삼척도계2【59C형 (23호)】



삼척도계2【59D형 (2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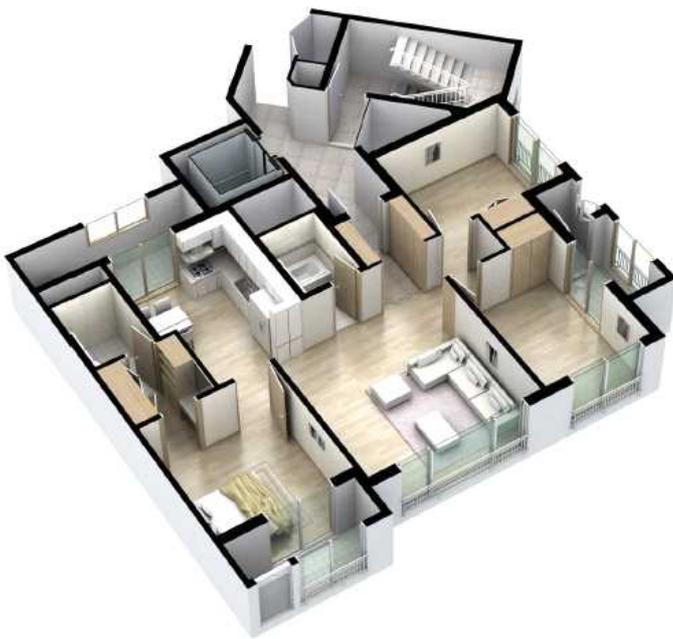
삼척도계2【74A형 (50호)】



삼척도계2【74B형 (15호)】



삼척도계2【84A형 (26호)】



삼척도계2【84B형 (21호)】



# 위 임 장

(배우자 이외의 자가 신청서 작성)

(수임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위 수임인에게 (단지명/형별 기재)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2022년 7월 25일 공고) 신청/접수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합니다.

2022년       월       일

※ 위임인 인감증명서 1통, 신분증(위임인, 수임인), 인감도장 지참

※ 위임장은 반드시 신청자가 자필로 작성

(위임인)

성 명	(인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